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70 (2022. 7. 11 ~ 7. 15)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기업송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한 뒤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관은 매출액, 부채비율, 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건전성 개선계획과 재무구조 개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기업송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가 제한 처분을 손쉽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합병·분할 뒤 업종을 이어받은 법인에 종전 법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승계 될 수 있도록 함.
국회 계류안	공정거래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을 금지하도록 함.
공포 법령	기업금융	④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입법/ 행정예고	기업금융	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들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사모펀드나 장외 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상품 투자의 권유를 금지하도록 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송언석 (국민의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출자하거나 재정을 지원하여 설립·운영되는 공익목적의 기관으로서 경영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부채의 규모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7년 493조원, 2018년 501조원, 2019년 525조원, 2020년 541조원, 2021년 583조원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부채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다시 사채(社債)를 발행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궁극적으로 최종 비용부담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토록 함. 또한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관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출액, 부채비율, 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건전성개선계획과 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A2D0F6Y2O4I1L4U4R3S5W6D1E5F1	한국경제 22.07.10. 부실 공공기관 재무관리 강화한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7107949i	22.07.08.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입찰담합 등 공적 사업의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가 분할 및 합병의 방식으로 제재를 손쉽게 회피 가능한 점이 문제로 지적받아왔음. 이 법은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에게 행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합병, 면허의 양도·양수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 사업의 공정한 입찰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안 제27조의6의 신설 등).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S2X0Q6D3T0I1D5W1M4O4U8T2A8D6		22.07.05.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또한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H2T0H6T1A0Z1B4A2A1I4B0X4F3P2	헤럴드경제 22.07.11. 공정위, 자동결제 유도·가격비교 방해 '다크패턴' 마케팅 규제 시동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711000023	22.06.14. 제안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별도로 지시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제도 설정 당시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나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752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방법 · 절차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매월 확정적으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고, 근로자는 부담금 운용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수준으로 퇴직급여를 받는 퇴직연금제도 ■ 주요내용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제13조 신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의 예상수익이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되고 손실가능성이 예상수익과 중 · 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등의 요건을 갖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제13조의2 신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외에도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제13조의3 신설) 가입자가 기한 내에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적립금이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가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 · 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된 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함.	동아일보 22.07.06. 300조 육박 퇴직연금, 수익률 높인다… 알아서 운용 '디폴트옵션' 12일 도입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05/114307819/1	22.07.11. 일부개정 22.07.12. 시행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절차(제13조의4 신설) 1)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사유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등을 통지하도록 함. 2)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을 통지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등의 공시(제13조의5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금액과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및 사후조치(제13조의6 신설)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사유 및 절차를 정함. 2)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승인취소 사유와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가입자의 적립금을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사. 수수료 부과기준(제24조의2 신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업무의 구분,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및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되,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사용자나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 행위(제34조제1항제8호 신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때 특정 가입자를 우대하여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도록 하는 등 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영과 관련된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정함. 출처: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선불·직불지급수단에도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를 제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통일(안 제2조제10항) 나. 선불 및 직불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안 제3조제1항) 다.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10조제3항) 라.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하여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안 제11조제1항)	매일경제 22.07.07. 금융사, 일반 소비자에게 사모펀드 투자권유 못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598551/	22.07.07. ~ 22.08.16.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마. 전자서명 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안 제11조의2) 바. 소비자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권유금지를 확대(안 제16조제1항) 사. 법상 등록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4조제2항)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957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조선비즈][기사] 중대재해처벌법, 막상 재판 열리면 혼란 불가피…법조계 "불명확·비논리적" (2022.07.08.)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7/08/7ODS62QO3VEYTGHR2FCKYER22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주요내용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노동법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아직 실무상 선례가 축적되지 않은 만큼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각계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중처법 시행과 관련한 민·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옴.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책임 주체를 누구로 하고,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는데 한 지식산업법학과 교수는 “사업을 대표할 법률상 권한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로 ‘경영책임자’를 한정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반면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CSO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대표이사의 면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덧붙임. 이에 고용노동부는 유사 입법례가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음.

[동아일보][기사] 열사병 3명 땐 중대재해 해당…지자체, 공사장 안전 총력전 (2022.07.0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08/114348283/1

주요내용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온열질환이 포함돼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에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548명이고, 이 중 5명이 숨졌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55명보다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폭염 노출 장소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열사병 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돼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 있음.

실제로 1일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경남 창녕군에서 40대 남성이 농산물 공판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 사례를 포함해 온열질환 3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안전 규정을 적법하게 지켰을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지자체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사업장별로 그늘막 설치, 휴게시간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중.

[연합뉴스][기사]"중대재해법-산안법 함께 적용해 산재 인과관계 넓게 인정해야" (2022.07.08.)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8152000004?input=1195m

주요내용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공동학술대회에서 중처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면, 비교적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한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을 중간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중처법과 산안법을 결합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현직 검사의 제언이 나왔음.

중처법의 핵심 조항인 4조와 5조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배치와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등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겨 종사자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봄. 문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곧장 중대 재해와 연결됐는지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 이와 달리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중대재해법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훨씬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인과관계 규명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음. 김 검사는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면 사업주 등 책임자들의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함.

[매일경제][기사]"중대재해법 더 단순해져야 예방효과 커져" (2022.07.06.)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7/594570/

주요내용 노동계와 경영계·학계 인사들은 산업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 조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 '안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진단함. 산업별 현장 특성에 맞게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인적·기술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 사업주가 스스로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영국의 '목표 기반 규제'처럼 정부가 일괄적으로 규제를 정하면 오히려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므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설정하면 정부는 그것이 잘 이행되는지를 감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 영국은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한국과 달리 '적절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해 안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있음.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박민재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17
E : parkmj@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기업송무그룹



김수형
파트너변호사

T : 02-563-2900
E : shkim@draju.com

공정거래그룹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기업금융그룹



김인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61
E : kij@draju.com

중대재해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